

교직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심사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22.03.04., 2024.05.30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교직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총장, 교무처장, 총무처장,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교수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03.04.>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, 부위원장은 교원은 교무처장, 직원은 총무처장이 하며 총장이 부재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2.03.04.><개정 2024.05.30.>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원은 교무팀장, 직원은 총무팀장이 한다. <개정 2024.05.30.>

제3조 (임기)

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심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
- ②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대상자 수당에 관한 사항
- ③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

제5조 (회의 및 의결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 (회의록 작성)

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 (기타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5.30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